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01 |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22년 경제정책방향」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내 인상 +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특례 대상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소유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02 |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 장려금 지급에 활용되는 사업소득 산정기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 종	현 행(%)	개 정(%)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25 ▾
부동산매매업	30	4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45	40 ▾
고급·유흥주점업	45	55 ▲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60	55 ▾
금융업	60	70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5	70 ▾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제외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기본 15%) 확대

공제율	대 상
미숙아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이상 질환 치료 목적 의료비
난임 시술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현 행	개 정
환급 한도	연 20만원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

지원내용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 부탄: 개소세 전액(161원/ℓ)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 세입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건당 100→200만원 상향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 ▲

02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한 납부지연가산세 서울 인하

가산세율	현 행	개 정
일 0.025%	▶	일 0.022%

■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선발급 지연발급
직접·위탁공급 착오시 공제허용 범위	재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 ~확정신고기한 + 1년까지

03 |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주택유형	현 행	개 정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은 3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등 적용법인으로 분류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 적용
종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만 합산배제	▶ 시·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만 합산배제	▶ 모든 어린이집까지 확대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지정가능대상	현 행	개 정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 세무사 등	▶	법무법인 추가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제도 구체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22년 시행)
4개 연도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후 다음 2개 연도는 기재부장관이 지정

대상 공익법인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감사인	국세청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
절차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1일부터 절차 개시 → 11월중 지정 통지

■ 택주·맥주 주세율 확정·공시

현 행	개 정
택주	1ℓ 41.9원
맥주	1ℓ 834.4원
적용기간	2022. 4. 1. ~ 2023. 3. 31.

* 택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법률에 따라 매년 물가연동제 적용